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1호 2023. 1. 2(월)

선 람	기관의 장

조 례

- 남원시 조례 제1857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----- 1

훈 령

- 남원시 훈령 제438호 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----- 4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3년 1월 2일

남원시 조례 제 1857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,167명”을 “1,17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,137명”을 “1,14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30명”을 “34명”을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

(단위: 명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174	-				
정무직 계	1					
시 장	1	1				
일반직 계	1,123	-				
4급	6	4	1	1		
5급	57	26	2	3	3	23
6급 이하 계	1,060	-				
별정직 계	2	-				
6급 상당	1	-				
7급 이하	1	-				
연구직 계	4	-				
연구사	4	-				
지도직 계	44	-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41	-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총정원: <u>1,167명</u></p> <p>2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137명</u></p> <p>3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30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: <u>1,174명</u></p> <p>2. -----: <u>1,140명</u></p> <p>3. -----: <u>34명</u></p>

「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3년 1월 2일

남원시 훈령 제 438 호

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시장”을 “취임 100일 이내에 시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고려하여”를 “고려하여 시장 취임 후 5개월 이내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공약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”를 “공약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공약사항 확정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, 관리 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<u>시장</u>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확정한다.</p>	<p>제4조(공약사항 확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임 100일 이내에 시장</u>-----.</p>
<p>제5조(실행계획 수립) ① 추진부서의 장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재정상황, 모든 여건 등을 <u>고려하여</u>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,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5조(실행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고려하여 시장 취임 후 5개월 이내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실행계획 변경)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공약총괄부서의 장과 <u>협의를 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실행계획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약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